

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典當舖營業法 改正理由

營業許可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을 刑罰에서 過怠料로 전환하여 國民의 權益을 보호하며, 罰金刑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上向調整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住居가 일정하지 아니한 者 및 同居親族중에 典當舖營業의 正지를 받은 者가 있는 경우에도 典當舖營業의 許可를 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3條第1項).

나. 다음 위반사항에 대한 罰則을 刑罰에서 50萬원이하의 過怠料로 轉換함(法 第35條).

- (1) 각종 申告義務 및 揭示義務를 위반한 때
- (2) 廢業등으로 許可證을 반납하여야 할 者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 (3) 警察官의 出入·檢査時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4) 贖物取得時에 過失로 이를 申告하지 아니한 때

다. 罰金刑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上向調整함(法 第31條 내지 第34條).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勇역경비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公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印

1995년12월30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 우 석

◎法律 第5,124號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

用役警備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用役警備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業務(이하 “警備業務”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都給받아 행하는 營業을 말한다.

가. 施設警備業務

國家重要施設·産業施設·公共施設·事務所·興行場·住宅·倉庫·駐車場·行事場·遊園地·航空機·車輛기타 警備를 필요로 하는 施設 및 場所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業務

나. 護送警備業務

운반중에 있는 現金·有價證券·貴金屬·商品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業務

다. 身邊保護業務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危害發生을 방지하고 그 身邊을 보호하는 業務

2. “警備員”이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用役警備業의 許可를 받은 法人(이하 “用役警備業者”라 한다)이 採用한 고용인으로서 警備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第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 本文중 “다음各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同條에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用役警備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法人은 都給받아 행하고자 하는 警備業務를 特定하여 당해 法人의 主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都給받아 행하고자 하는 警備業務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警備人力·資本金·施設 및 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의 節次, 申告의 期限등 許可 및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의 題目“(用役警備業者의 義務등)”을“(用役警備業者등의 義務)”로 하며, 同條第1項중 “用役警備業者 및 警備員은”을 “用役警備業者,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 및 警備員은”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用役警備業者 및 警備員은 警備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誠實히 任務를 다하여야 하며”를 “用役警備業者 및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

警備員은 警備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警備業務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로 하고, 同條第4項을 第6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用役警備業者의 任員 및 職員(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 및 警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職務상 알게 된 警備對象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用役警備業者는 警備員을 許可받은 警備業務의 業務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의2 내지 第6條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條의2 (警備指導士의 選任) ①用役警備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備指導士를 두어 警備員을 指導·감독하고 教育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는 第6條의3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資格證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③警備指導士의 職務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의3 (警備指導士의 資格등) ①警備指導士는 30歲이상인 者로서, 警察廳長이 施行하는 警備指導士 試驗에 合格하고 內務部令이 정하는 教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②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을 받은 者에게 內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備指導士資格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資格證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讓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警備指導士試驗의 應試資格, 試驗科目, 試驗公告, 試驗의 일부가 免除되는 者의 범위 기타 警備指導士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의4 (警備指導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警備指導士가 될 수 없다.

1. 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5. 警備指導士의 資格이 取消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6條의5 (警備指導士資格의 取消·정지) ①警察廳長은 警備指導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

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警備指導士資格證을 교부받은 때

2.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3. 警備指導士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讓渡한 때

②警察廳長은 警備指導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年의 범위내에서 그 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警備員의 指導·감독·教育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警備員이 警備對象에게 損害를 입힌 때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資料의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때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命命을 위반한 때

4.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警察廳長은 警備指導士의 資格을 取消한 때에는 警備指導士資格證을 회수하여야 하며, 警備指導士의 資格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第7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歲미만인 者

第9條의 題目“(警備員의 解免命命)”을“(警備員 및 警備指導士의 解任命命)”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命이나”를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이 法 또는”으로, “解免을”을 “解任을”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警察廳長은 警備指導士가 第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備指導士의 資格을 取消한 때에는 用役警備業者에 대하여 그 警備指導士의 解任을 명하여야 한다.

第11條의 題目“(報告 및 臨檢)”을“(보고 및 檢査)”로 하고, 同條第1項중 “用役警備業者에”를 “用役警備業者 또는 警備指導士에”로 하며, 同條第2項중 “臨檢에 臨하는”을 “檢査·質問을 행하는”으로 한다.

第12條第2項에 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3項을 第4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3. 正當한 이유없이 최종 都給契約 終了日의 다음 날부터 1 年 이내 用役警備都給實績이 없을 때
- 5. 第6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 ③第1項 또는 第2項(第5號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은 당해 用役警備業者가 許可받은 警備業務중 許可取消事由에 해당되는 警備業務에 대하여 행한다.

第13條第1項중 “警察廳長은”을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으로, “用役警備業者를”을 “用役警備業者 및 警備指導士를”로 하고, 同條第2項중 “用役警備業者의”를 “用役警備業者의 事務所 및 出張所의”로, “臨하여”를 “출입하여”로 한다.

第14條第2項중 “第1項의”를 “第1項 또는 第2項의”로 하여 이를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②用役警備業者는 警備員이 業務遂行중 故意 또는 過失로 第3者에게 입힌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15條의2第1項중 “第14條第1項의”를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로 한다.

第1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用役警備業을 영위한 者
- 2. 第6條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3.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17條 本文중 “100萬원이하의”를 “500萬원이하의”로 하고, 同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4號중 “臨檢을”을 “檢査를”로 하고, 同條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3.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한 者

5.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第1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 (위임 및 委託) ①警察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警察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警察廳長은 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의 試驗 및 教育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門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附 則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②(警察廳長의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廳長이 행한 用役警備業의 許可, 警備員解免命令 및 營業停止命令은 당해 用役警備業者의 主事務所의 所在地를 산정하는 地方警察廳長이 행한 것으로 본다.
- ③(기존의 用役警備業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用役警備業의 許可를 받은 法人은 그 警備業務의 범위를 第2條第1號가目 및 나目的 規定에 의한 施設 警備業務 및 護送警備業務로 특정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用役警備業法 改正理由

私設警備業을 用役警備業의 한 분야로 吸收하고, 警備員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警備員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警備指導士制度를 신설하며, 用役警備業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現行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補充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個人의 身邊을 保護하고 危害發生을 防止하는 身邊保護業務를 用役警備業의 한 분야로 추가함(法 第2條第1號가目).
- 나. 用役警備業에 대한 警察廳長의 許可權限을 用役警備業을 하고자 하는 法人의 主事務所의 소재지를 管轄하는 地方警察廳長에게 이양함(法 第4號第1項).
- 다. 用役警備業體의 任·職員, 警備指導士 및 警備員은 職務상 알게 된 警備對象의 秘密을 漏泄하거나 부정한 目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法 第6條第4項).
- 라. 警備員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警備指導士制度를 新設함(法 第6條의2 내시 第6條의5).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개발촉진법등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 우 석